

#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위원

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!

남 창 진 의원입니다.

지난 3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

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상위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2022년 11월 1일 자로 점용료의 부과·징수 조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낼 수 있도록 제71조제3항이 추가됨에 따라 점용료 반환 조항은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서 제6항과 제7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가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1조제5항과 제6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변경에 따라 인용 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  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 
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